###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

제정 2020. 5. 18. 구칙 제1563호 일부개정 2020. 7. 10. 구칙 제1569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) 일부개정 2022. 7. 4. 구칙 제1617호(제명개정) 일부개정 2022. 12. 30. 구칙 제1627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) 일부개정 2023. 4. 28. 구칙 제1635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7. 4.>
- 제2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①「지방회계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,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,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.
  -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.
  -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·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. 다만,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, 법제36조에 따라 재무관·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.
  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, 평생학습원, 상하수도사업소, 하천녹지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10., 2022. 7. 4., 2022. 12. 30., 2023. 4. 28.>
- 제3조(징수관의 직무위임)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.
  - 1. 법령, 조례,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확정 된 세입의 징수 결정
  - 2. 교부금, 부담금, 보조금, 전입금의 징수 결정
  - 3. 과오납금의 반환
  - 4.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
  -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.
  - 1. 법령, 조례,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확정

된 세입의 징수 결정

- 2. 대체징수 결정
- 3. 과오납금의 반환(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)
- 4.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
- 제4조(재무관의 직무위임)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.
  - 1.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 조·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
  - 2. 급여 등 인건비, 여비, 일반운영비, 직무수행경비, 업무추진비, 공공요금, 제세 공과금, 전출금, 지방채원리금,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, 보조금, 위탁금, 대행사업비,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
  -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의 구매
  -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.
  - 1.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·용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물건 매입
  - 2. 급여 등 인건비, 여비, 직무수행경비, 업무추진비, 공공요금, 제세 공과금,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
  -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
- 제5조(예산집행 품의) ①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(이하 "훈령"이라 한다)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, 실·국장,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7. 4., 2023. 4. 28.>
  - 1. 부시장: 추정금액 1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, 5억원 이하의 의 제조·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
  - 2. 실ㆍ국장: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, 2억원 이하

- 의 제조·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
- 3. 과장: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, 수당, 전출금,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. 다만,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·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-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,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6조(재정사항의 합의) ①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집행 품의를 할때, 본청은 회계업무담당실·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,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한다)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.
  - 1. 공사・용역 계약과 관련 된 경비(200만원 이상)
  - 2. 물품 제조·구매(200만원 이상)
  - 3.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(50만원 이상)
  - 4. 민간위탁 경비
  - 5. 민간이전 경비, 보조금, 보상금, 행사 관련 경비
  - 6. 시간외근무수당, 성과 상여금, 포상금
  - 7.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및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.
  -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산업무담당실·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.
  - 1.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
  - 2. 재정에 관계 되는 조례, 규칙, 고시, 훈령 및 예규의 제정·개폐에 관한 사항
  - 3. 국고 보조의 수입, 세외수입의 감면,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 의 채납에 관한 사항
  - 4. 보조금의 지원 계획 통보, 기부금, 대부금,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

- 5. 시비 보조 단체의 예산,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, 승인,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
- 6. 시유재산의 취득,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
- 7.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 올 사항
- 8.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, 동의,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
-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또는 이례 에 속하는 사항
- 제7조(지출의 절차)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로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(인터넷을 통한 구매를 포함한다)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.

[본조신설 2022, 7, 4.]

제8조(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)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「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에 따라지정한다. <개정 2022. 7. 4.>

[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. 7. 4.]

제9조(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)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「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에 따라 지정한다. <개정 2022. 7. 4.>

[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. 7. 4.]

- 제10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재정보증은 「보험업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
  -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,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.

[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. 7. 4.]

제11조(재정보증 한도액)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 상으로 한다.

[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, 7, 4.]

제12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
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
- 2.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
- 3.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시장은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,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. 7. 4.]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폐지)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은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안양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 중 공통사항의 일련번호 6 회계 분야에 관한사항 가목부터 다목까지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Q) =}			전결권자				
일련 번호	단 위 사 무 명	담딩	자	단・과	실·국	부시장	시장
ᇿᅩ		실무자	팀장	담당관	소·원장	구기경	
6	회계 분야에 관한사항						
	가.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						
	1) 예정금액 15억원 초과						0
	2) 예정금액 5억원 초과 15억원 이하					0	
	3) 예정금액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				0		
	4) 예정금액 5천만원 이하			0			
	나. 제조 또는 용역 예산집행 품의						
	1) 예정금액 5억원 초과						0

(۱۵	단 위 사 무 명	전결권자					
일련 번호		담당	자	단・과	실·국	부시장	시장
U-T-		실무자	팀장	담당관	소·원장	T/1/8	
	2) 예정금액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					0	
	3) 예정금액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				0		
	4) 예정금액 5천만원 이하			0			
	다. 그 밖의 예산집행 품의						
	1) 예정금액 3억원 초과						0
	2) 예정금액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					0	
	3) 예정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			0		
	4) 예정금액 5천만원 이하			0			
	5) 봉급, 수당 및 그 밖의 법령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			0			

별표 2 중 공통사항의 일련번호 6 예산·회계·공사에 관한 사항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الدارة	년 단 위 사 무 명		선결권자		
일련 번호			담당자		구청장
건소		실무자	팀장	과 장	
6	예산·회계·공사에 관한 사항				
	라.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그 외의 것으로써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, 수당 및 그 밖의 법령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예산집행 품의			0	

부칙 <2020. 7. 10. 규칙 제1569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「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 중 "환경사업소"를 "하천녹지사업소"로 한다.

별표 2 중 "환경사업소"를 "하천녹지사업소"로 한다.

#### ④ 및 ⑤ 생략

부칙 <2022. 7. 4. 규칙 제161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「안양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」의 제2조제1항제4호 중"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을"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"으로 한다.
  - ②「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」제12조 중 "「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을 "「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으로 한다.
  - ③「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」의 제7조제2항 중"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을"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"으로 한다.
  - ④ 「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」제3조제2항 중 "「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제2조제4항에 따라 본청의 경리관에게"를 "「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제2조제4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에게"로, 제5조 중 "「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을 「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으로, 제57조제2항 중 "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85조"를 "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제67조"로 한다.

부칙 <2022. 12. 30. 규칙 제1627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- ⑥「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4항 중 "평생교육원"을 "평생학습원"으로 한다.
- (7) 생략

부칙 <2023. 4. 28. 규칙 제163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안양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 중 공통사항의 일련번호 6 회계분야에 관한 사항 나목 "제조 또는 용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

역"을 "제조·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"으로 한다.

### [별표 1]

# <u>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</u>(제2조제1항 관련)

관 직 명	본 청	의회사무국	제1관서	기타관서	동	
회계책임관	회계업무담당실·국장	-	-	-	-	
징 수 관	세입업무담당실·국장	사무국장	관서의 장	관서의 장	동장	
분 임 징 수 관	세입업무담당과장, 세외수입 소관 과장	-	세입업무담당과장	-	-	
재 무 관	회계업무담당실·국장	시무국장	관서의 장 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)	-	동장 (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)	
분 임 재 무 관	회계업무담당과장, 각 실·과장 (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)	-	회계업무담당과장 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) 각 과장 (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)	관서의 장	-	
총괄채권관리관	세입업무담당실・국장	-	-	-	-	
채 권 관 리 관	소관 과장	시무국장	관서의 장	관서의 장	동장	
총괄부채관리관	예산업무담당실·국장	-	-	-	-	
부채관리관	소관 과장	사무국장	관서의 장	-	-	
총괄기금관리관	예산업무담당실·국장	-	-	-	-	
통 합 지 출 관	회계업무담당과장	-	-	-	-	
지 출 원	재무업무담당주사	의정업무담당주사	재무업무담당주사	-	재무업무담당주사 (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)	
수입금출납원	세입업무담당주사,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담당주사	세입업무담당주사	세입업무담당주사	서무업무담당과장,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주사 또는 서무업무담당주사	세입업무담당주사	
일상경비출납원	각 과 서무업무담당주사	-	각 과 서무업무담당주사	서무업무담당과장,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주사 또는 서무업무담당주사	-	
세 입 세 출 외	재무업무담당자	지출업무담당자	재무업무담당자	서무업무담당자	재무업무담당자	
현 금 출 납 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					상이 업무처리	

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

[별표 2] <개정 2023. 4. 28>

##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구분(제2조제2항 관련)

지출원을 설치한 관서(제1관서)	기타 관서
1. 만안구청 2. 동안구청 3. 만안구보건소 4. 동안구보건소 5. 평생학습원 6. 상하수도사업소 7. 하천녹지사업소 8.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	지출원이 없는 관서